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2. . . (제 회)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출자	지식경제부장관 홍 석 우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2. . .

의견수렴

1. 의결주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술개발 및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 마련된 관리제도로는 계량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며,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전력량계 등 일부 계량기 위주의 관리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측정기 등 계량의 기본요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정량표시상품을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생필품 등으로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계량기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신설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7호)

- (1) 현행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되는 일부 상품으로 한정관리하고 있어 미용화장지, 물티슈, 벽지 등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

어 지지 못하여 왔음.

(2)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정량표시상품의 대상 범위를 현행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외에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상품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정량표시상품이 개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 관리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공정한 상거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됨.

나. 자체수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1)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수리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자체수리자에 대한 인정 취소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한번 자체수리자로 인정되면 별도 사후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2) 자체수리자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자체수리자의 인정취소 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체수리자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 신설(안 제30조)

- (1) 계량기의 제조 결함 등이 발생하여도 수리, 수거 등을 위한 근거가 없어 관련 제품의 개선 및 유통차단 등에 한계가 있음.
- (2) 제조자 등이 계량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위해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제조업자가 제조결함 등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 개선토록 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조결함 계량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33조)

- (1) 수리한 계량기의 경우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수리 전 검정유효기간의 잔여 유효기간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시·도에서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업무추진 시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됨.

- (2) 계량기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업과 수리업을 등록한 자 등이 수행토록하고, 수리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의토록 규정함.
- (3)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사, 검정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체정기검사사업제도 신설(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1) 저울 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의 관리정도에 관계없이 2년 마다 지정장소 방문 등을 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으며 방문검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함.
- (2) 검사요원, 설비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계량기(정기검사 대상)를 검사·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3) 일정 자격을 갖춘 이용자가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방문검사로 발생 가능한 계량기 이용자 불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바. 측정용 계량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 구축(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1)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및 측정기에 대한 교정관리 등의 사항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2) 교정절차, 교정주기 등 교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일부 계량기 중 이미 현장에서 자율 교정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율 교정관리 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3) 일반 측정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구축을 통하여 기업 등의 측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형식승인대상 계량기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일부 측정기를 자율교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기업 및 관리주체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불법 이익금 과징금 부과 및 위반업소 명단공표 근거 신설(안 제58조, 제62조)

- (1) 계량기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보다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이 커 계량기 불법조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 (2) 계량기 불법조작자와 그 위반사실을 공개하고 필요시 계량기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 이익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3)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불법 이익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계량기 불법조작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안 제61조, 제63조)

- (1) 계량기의 설치·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의 단속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 (2)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제한적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단체 소속 직원 등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지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의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함.
- (3) 시·도 단속인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계량기 이력관리 등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8조, 제69조)

- (1) 계량기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등 체계적 계량관리에 한계가 있음.
- (2) 계량기 이력관리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3) 계량정보에 대한 통계적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의 불법 사용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 계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차. 처벌위주에서 개선유도형 벌칙운영으로 변경(안 제83조)

- (1) 비법정단위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도 별도 개선권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와 위반자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유도를 통한 법정단위 사용 유도에도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2) 법정단위 사용 등 처벌보다는 권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1회에 한하여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3) 과태료 부과 전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

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등의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아울러 처벌보다는 개선유도를 통하여 비법정단위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 생략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측정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 "측정기"란 측정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6.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을 말한다.

7. “정량표시상품”이란 법정단위에 따른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이하 “정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정 및 측정기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법정단위 및 법정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1절 법정단위

제4조(법정단위) ①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측정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본단위와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법정단위의 사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올바른 법정단위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단위의 사용에 관한사항 등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비법정단위가 단독 또는 법정단위와 같이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②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 등에 단독 또는 법정단위와 같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처분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선 처분절차 및 개선결과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법정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7조(판매 등의 제한) 계량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수리업을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수입업을 하려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및 판매업을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판매(양도·대여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를 위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제10조에 따라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것
5. 제38조에 따른 검정증인(證印) 또는 제43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6. 변조된 것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 각 호에 따라 판매, 광고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것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리 후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5.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제9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량·측정 관리체계 구축 등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11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계량 증명업을 하려는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에 대한 제조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계량기를 제조하는 영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2. 계량기 수리업 : 계량기에 대한 수리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이하 “수리업”이라 한다.)
3. 계량증명업 :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

명하는 영업

-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수리업의 수리범위, 계량증명업의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계량증명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⑥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 인정의 기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⑤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인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수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⑥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로 정한다.

제13조(수입업의 신고) ①계량기 수입을 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조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수입업자 및 자체수리자는 사업자명, 검사설비 요건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업자 등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인정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등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16조(등록업자 등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자체수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수리업자의 수리내역

3. 계량증명업자가 발행한 증명서 및 관련 내역

4. 자체수리자의 수리내역 및 검사기록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자체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위하여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검사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2.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수리업자나 계량증명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폐업 등의 신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및 신고의 효력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수입업자 또는 자체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인정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또는 인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11조제3항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3항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2항 따른 신고사항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인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③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제17조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2절 계량기 형식승인

제19조(형식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의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수입업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형식승인의 면제)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형식승인의 면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사항 신고)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하는 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요원, 시험설비, 형식승인업무규정 등을 갖추는 것
3.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4.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업자 및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는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일 것

③제2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승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형식승인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기관명, 사업범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

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성적서
3. 형식승인 관련 형식승인서
4. 제29조에 따른 형식승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서류
5. 제5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결과에 관한 보고사항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68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3. 형식승인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형식승인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형식승인의 취소)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7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등록 취소나 신고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29조제2항이나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시 사업장 등의 출입이나 계량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형식승인의 보고와 검사 등)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형식승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계량기를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품결함의 시정)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는 계량기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계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준 중 표시사항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9조제2항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31조(검정)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제20조제2항에 따른 면제자를 포함한다)는 제조 및 수입한 계량기를 판매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
2. 기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③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검정)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및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재검정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리한 계량기의 검정)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자체수리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계량기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시·도지사에게 그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수리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시·도지사는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업무를 실시하기 전 최초 1회 관련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업무를 중지하거나 그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검정, 제32조에 따른 재검정 및 제33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업무규정 등을 갖추는 것
3.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갖추었을 것
4.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업자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는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일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검정 및 제33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검정업무규정 등을 갖추는 것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일 것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수량 대비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 이하일 것

④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정 결과 서류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절차, 사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검정기관 등의 변경사항 신고) ①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기관명, 사업범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검정기관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검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검정 결과 관련 서류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68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3. 검정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검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7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 증인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의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 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등 이상이라고 형식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의 표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9조(정기검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

·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교정 등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계량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의 정기검사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제3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를 직접 자율적으로 검사관리 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검사업무규정 등을 갖추는 것

2. 계량기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사업자명, 보유 계량기의 범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①시·도지사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39조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3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시·도지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가 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등 이상이라고 형식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교정대상 측정기 관리 등

제44조(측정기의 교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측정기의 재교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만료 전에 그 측정기에 대하여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측정기의 자율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측정기의 정확도 관리 및 측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이외의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기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7조(정량표시상품) ①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 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정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및 상품별 허용오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량, 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 등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개선처분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개선처분 절차 및 개선결과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아 그 상품의 정량 오차가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사업자(이하 "정량표시상품 적합성 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9조제1항의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확인요원, 정량검사 설비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52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 등의 변경사항 신고) ①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은 기관명, 사업범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관련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관련 적합성확인서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68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3. 정량표시상품 확인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정량표시상품 확인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량

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는 자기적합성 선언 품목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정량표시
상품 확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한다.

제55조(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①제49조제1항의 정
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
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를 명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상품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8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3.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시 사업장 등의 출입이나 정
량표시상품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제5장 사후관리

제56조(보고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조업 등록현황,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정량표시상품 확인현황, 교정대상 측정기 교정능력, 비법정단위 단속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
7.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제57조(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불법 계량기의 유통방지,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교정대상 측정기의 교정여부 확인 및 법정단위 사용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자체수리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판매업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 법정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 사용자 등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공장, 계량기 설치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 훼손, 조작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3. 유통 중인 계량기, 상품 등이거나 제조·수입한 계량기, 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 조사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계량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량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위반사실 공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기의 변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련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계량종합관리시스템

③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업소명
2. 위반업소의 주소
3.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치한 내용
4.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

제59조(부정계량기 등의 처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것
2. 제10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를 위반한 것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및 수입한 것
4. 제13조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것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교정을 받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른 증인의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사법경찰관) 계량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1조(소비자감시원) ①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검정 및 정기검사 유무 확인

2. 정기검사 및 단속업무의 보조

3.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유무 확인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감시원은 제3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는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의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⑦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감시원이 제7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관련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감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항의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과징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 제37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업무정지로 인하여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3항 따라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3조(신고 포상금)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9조제3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계량·측정산업 육성

제64조(계량·측정 산업의 육성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측정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측정 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신기술 계량기 및 측정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계량기 및 지능형 계량관리체계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계량·측정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지원 확대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측정기술 등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실태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외 계량·측정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측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계량·측정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측정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계량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측정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 계량·측정 산업 관련 기술정보 교류
3.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계량·측정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 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8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등록사항, 제12조제3항의 인정사항 및 제13조제1항의 신고사항

2. 제19조제1항의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31조제1항의 검정, 제32조제1항의 재검정, 제33조제2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검정 현황

4. 제39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44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제48조제1항의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 및 품목 현황

7.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8.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68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계량증명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②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을 위한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법정계량 연구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법정계량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정계량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3.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법정계량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1조(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지정받거나 또는 등록 및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5.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6.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8.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의 장

②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에 관한 사업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만하여 그 형식승인서를 승계 받을 수 있다.

제72조(계량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담당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3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측정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측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청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취소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②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나 신고의 효력정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3.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14.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 제41조, 제50조, 제54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자
 15. 제71조에 따른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
-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에 의한 감시원 및 제7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별칙

제78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6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사용 한 자
3. 제59조제1항에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고 사용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2. 제7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수리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8.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검사한 자
10.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을 받지 아니한 정량표시상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6조제3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변경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8. 제5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미수범) 제78조제1호·제2호, 제79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80조제3호·제4호·제7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

별한다.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7조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제품결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 광고를 의뢰한 자 및 광고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5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5. 제7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정장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 자
7.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제30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
12.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리 후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14. 제44조제1항이나 제45조에 따른 교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
1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 제41조, 제50조, 제54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57조제1항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18.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
호, 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가 과태료 부과 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법률 제 호, 2012. . >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기준기의 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또는 기준기의 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받은 자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체수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체검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 확인업무를 하는 적합성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기적합성선언 실량표시상품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실량표시상품사업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적합성사업자

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계량·측정제도과	
연 락 처	(02) 509 - 7231